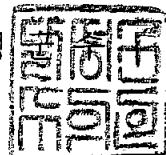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3
----------	-----

제출일자 : 2006. 12. 7.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 및 일반음식점의 대상규모를 자치구 설정에 맞게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 2004. 11. 1.부터 시행한 전용봉투에 의한 일반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수거방식을 개별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거방식과 병행 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정의 규정 개정(안 제2조제2호)
- 납부필증 및 납부필증 보관함의 용어 추가(안 제2조제7호 및 8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에 개별전용수거용기 사용 추가(안 제5조)
-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징수 방법에 납부필증 추가(안 제11조제1항 및 2항)
- 납부필증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2)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나. 입법예고 : 2006. 11. 16. ~ 2006. 11. 30.(특이사항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제2호 중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을 “제9조의2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으로 하고 제2조 제7호 및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납부필증”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8. “납부필증 보관함”이라 함은 개별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배출 지역 중 군수가 정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납부필증보관함이 부착된 개별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개별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납부필증보관함에 투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납부필증보관함은 내구성이 강하고 투명한 재질로 납부필증이 잘 고정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개별전용수거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⑤ 군수는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를 “일반주택(소규모 음식점 포함한다)은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고”로 하며, 제2항 중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을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 제2호 부과항목별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과항목란 제1호 가목의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납부 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처리기한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영업장 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kg/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량 처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kg/일		kg/일		kg/월	
자가재활용 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 계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kg/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1부(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필증						
상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감량	kg/월					
자가재활용	kg/월					
위탁재활용	kg/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달성군수(인)						

【별지 제3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출자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사업장 규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영업장 면적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명 m^2 m^2 m^2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능력 (kg/일)	연간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 방법	위탁량	재활용 방법	업체명 (대표자)	업체 총	주 소 (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달성군수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명</u>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u>제2조 (정의) 생략</u> 1. (생략) 2. 음식물류 폐기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u>제명</u>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u>제2조 (정의)(현행과 같음)</u> 1. (현행과 같음) 2. ----- ----- <u>제9조의2 제1호, 제3호</u>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u>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u>
7. <신 설>	7. “납부필증”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8. <신 설>	8. “납부필증 보관함”이라 함은 개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함을 말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생략) 1. ~ 2. (생략) 3. <신 설>	제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지역 중 군수가 정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납부필증보관함이 부착 된 개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개별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납부필증보관함에 특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 ③ (생략) ④ <신 설> ⑤ <신 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납부필증보관함은 내구성이 강하고 투명한 재질로 납부필증이 잘 고정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개별전용수거용기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군수는 납부필증을 종류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현 행	개 정 안			
<p>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p> <p>②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① _____ 일반주택(소규모 음식점 포함 한다)은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하고 _____.</p> <p>② _____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은 _____.</p>			
제16조 <신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생략)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생략	5	10	20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현행과 같음)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현행과 같음	5	10	20